

『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<결손처분> 용어를 <정리보류>와 <시효완성정리>로 구분하고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<결손처분>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<시효완성정리>로 처리하고,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정리보류>로 용어를 구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(안 제2조제2항제1호)
-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
(안 제2조제2항, 제2조제2항제3호가목, 제2조제2항제3호나목, 제2조제2항제3호라목, 제2조제2항제4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, 「지방세징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 조항에 근거하여 “결손처분” 용어를 사유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“시효완성정리”로, 그 외의 사유는 “정리보류”로 구분하는 관련 규정의 단순 정비로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